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오 배건이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팀장
✉ bgy2694@klri.re.kr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보건의료분야는 아동이 안온하게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구축이 우선시 되는 중요한 입법영역이다. 최근까지 국가의 지속적인 의료공공성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저출산 현상 및 의료격차 증가 등)으로 인해, 여전히 아동 보건의료 취약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세대 보호의 관점에서 아동의 생애주기 및 대상별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보건의료 관련 입법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로 부딪치는 기본권 충돌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문제시 되기도 하였다. 부모의 양육권은 아동에 대한 우월적 지배권이나, 아동의 건강과 생명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결정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양육권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의미하고, 오히려 국가에 대해 보호를 청구할 의무와 권리를 의미한다. 아동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있는 경우, 아동의 건강권이 부모의 양육권에 우선하며, 자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있음에도 부모가 의료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생명에 대한 부모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I. 주요내용

1. 아동 보건의료의 특성 및 법적 기반

아동 대상 보건의료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 보건의료의 특성상 의료결정 시 법정대리인 및 가족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존성을 갖고 있다. 또한 아동은 성장과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신체 및 생리구조로 인해 보건의료결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아동기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개인의 평생건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아동은 헌법 제34조제1항, 헌법 제35조제1항 및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헌법상 건강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배제 및 적극적 건강조치를 요구할 권리갖고 있다. 다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연령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실체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아동 역시 국민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이하의 건강권 등에 대한 주체가 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의 건강권은 헌법상 건강권을 법률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아동 건강과 관련된 사회이슈에서 헌법상 아동의 건강권 해석과 관련해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건강권이

2.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아동 보건의료법제와의 비교법 분석

비교법 분석결과, 첫째,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시 1차 의료의 기반이 탄탄히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 통합적 연계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일은 사회적 연대를 복지서비스의 기본구성요소로 보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방사회법전(SGB)」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및 주, 비영리민간단체 간 상호협력의 근거를 조문화 하고 있었다. 나아가 스웨덴은 「보건의료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공급주체 간 협력을 실질화 하기 위해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 내 아동 보건의료체계 역시 개별 기관 간 통합적 연계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보건의료·복지·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셋째, 주치의제도의 경우 1차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재원을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정착시키고 있었다. 스웨덴은 주치의 선택 시 지역적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적 의료 편차가 큰 상황 속에서 환자의 보건의료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주치의 제도를 보건의료정보 관리와 연계하여 정보관리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연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먼저 지속가능한 아동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법」 및 「아동복지법」과 같은 아동 보건의료 주요법률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건의료와 관련된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법률의 경우, 보건의료와 관련된 중요 법정계획 수립 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데, 이를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보건의료 현안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까지 논의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보호기관, 취약아동 통합지원서비스 기관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아동 보건의료에 있어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상 상호협력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보건의료에 있어서 이미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영역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영역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지역아동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나아가, 지역 내 아동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 간 연계 역시, 상호협력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아동

의 보건의료와 관련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 이들 기관의 업무 가운데 아동 건강관리 및 증진에 영역에 있어서는 정보교환 및 상담을 통한 솔루션 제공 등을 연계한다면, 개별 기관의 업무능력의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학교보건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지역 보건소와 학생의 질병치료 등에 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역 보건의료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보건소의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관련 기관 간 상호 협력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통합적 연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5. 지속가능한 아동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지속적인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교법적 검토사례를 토대로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시 법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첫째, 아동 주치의 초기도입은 보편화를 강조하기보다는, 아동 또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특수 분야의 전문영역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분야의 전문의를 주치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료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만 19세 이상의 청소년 아동 및 부모 그리고 법정대리인 등이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치의 선택 시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진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동 주치의 자격의 경우, 가정의 중심의 주치의제도를 기반으로, 소아과 및 아동의 질병 및 건강특성에 따라 타 과 의료인을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치의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주치의제도와 연계하여 아동 보건의료정보의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프랑스처럼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을 도입하여 아동의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정보가 연계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시스템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아동은 국가의 미래상으로서,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탄탄한 구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의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이 마련하여, 아동의 생애주기별 성장에 맞춰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해 본다.